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
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조정하여 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시행계획 수립·시행 및 실태조사 업무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조정(현행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)

나.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6년 1월1일로 설정(부칙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 : 없 음

대통령령 제 호
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권한의 위임) ① (생 략)	제7조(권한의 위임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위 임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전 단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 해(어업·양식업과 관련된 작 업으로 인한 재해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자료제출 요청</u>	<u><삭 제></u>
2. <u>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전 단에 따른 안전재해(어업·양 식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한정한다)에 대한 실 태조사의 실시, 조사결과의 공 개 및 자료제출 요청</u>	<u><삭 제></u>
3. <u>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어 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</u>	<u><삭 제></u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468